

고 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-79호

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2호(2017.02.16.)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금천구 고시 제2021-84호(2021.06.3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5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 7. 2.
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9-1번지 외 3필지

나. 구역면적: 28,336㎡(획지 26,922㎡, 도로 1,414㎡)

3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

가. 사업시행자: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박현주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2, 2층(☎02-804-1007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- 변경 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60개월

- 변경 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120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1. 6. 30.

6. 변경 사유 및 내용

가.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[`21.06.30.] ~ 60개월 → 120개월

나. 사 업 비 : 289,891백만원 → 559,634백만원

[공사비 상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반영 등]

7. 기타 관계도서: 생 략

※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및 금천구 주택과에 관련 도서 비치